

문서번호	장애인복지과 -18182
등록일자	2025. 12. 31.
결재일자	2025. 12. 31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주무관	장애인서비스팀 장	장애인복지과장	보건복지국장
			전결 2025. 12. 31.
허계영	휴가	박미향	김태운
협조			

2026년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계획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6. 1. 1. ~ 12. 31.
- 지원대상 :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(종전1~2급, 중복3급)
 - (18세 이상)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 수급자
 - (18세 미만)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월지급액 : 1인당 3만원
- 지원인원 : 10,000명(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)
- 예 산 액 : 3,600백만원(시비 100%)

□ 행정사항

-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 준용



대구광역시
DAEGU METROPOLITAN CITY
[장애인복지과]

-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- 2026년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계획

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「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」 수당을 지원하여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

1 근거 및 추진방침

① 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(장애수당) 및 제50조(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)
- 「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
② 추진방침

-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여 생활 안정 도모
-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타 복지 신청시 확인 및 안내 및 대상자 적극 발굴

2 추진현황

○ 연도별 예산·지원현황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사업량(명)	8,800	9,386	9,700	10,000
사업예산(백만원)	3,168	3,379	3,492	3,600

→ 장애인 등록인원 증가에 따라 지원인원도 증가 추세

○ 구·군별 수급자 현황

('25. 12월 기준)

계(명)	중구	동구	서구	남구	북구	수성구	달서구	달성군	군위군
8,837	279	1,376	702	705	1,451	1,191	2,373	640	120

3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6. 1. 1. ~ 12. 31.
- 지원대상 : 저소득 재가 중증장애인(종전1~2급, 중복3급)
 - (18세 이상)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 수급자
 - (18세 미만)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월지급액 : 1인당 3만원
- 지급인원 : 10,000명 (성인 9,150명, 아동 850명)
- 예 산 액 : 3,600백만원 (성인 3,294백만원, 아동 306백만원)
- 2026년 구·군별 예산배정 계획

구 분	지원인원	예 산	구 분	지원인원	예 산
계	10,000	3,600,000	북 구	1,590	572,289
중 구	326	117,278	수성구	1,384	498,433
동 구	1,533	551,876	달서구	2,728	982,392
서 구	767	276,124	달성군	693	249,402
남 구	820	295,052	군위군	159	57,154

4 세부 추진계획

1 신청접수

- 신청기간 : 연중 수시
- 신청장소 :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신청권자 : 본인, 보호자 또는 대리인* *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필요
- 구비서류
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(공통서식)
 - 소득·재산 신고서
 - 소득·재산 확인서류(해당자에 한함)
 - 신청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- * 대리 신청시 :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- ※ 처리기한 :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(30일까지 연장 가능)

② 대상자 선정 :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- 중증장애인 : 재가 등록장애인 중(종전1~2급 및 3급 중복장애)
- 가구의 범위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
「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」 적용
- 소득인정액 :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
(사적이전소득, 보장기관 확인소득,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)
-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
-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: 소득인정액 $\leq$ 기준중위소득의 50%

③ 수당지급

- 월지급액 : 1인당 월 3만원
- 지급기간 :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
 - 매월 20일 지급(지급일이 토·일요일 경우 전날 지급)
 - ※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15일 이후인 경우 매월 말일 추가 지급
- 지급방법 : 행복e음을 통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원칙
 - ※ (지급계좌 등)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지침 준용
- 지급 개시일
 - 기존 등록장애인 : 국민기초생활보장(장애수당) 신청일
 - 기초수급자(당연적용 대상)가 신규로 등록한 장애인 : 장애등급 결정일
 - ※ 장애수당 신청일 및 장애등급 결정일이 속한 달은 전액 지급
- 유의사항
 - 소득·재산, 장애등급 변경 : 변경된 날이 속한 달까지 전액 지급
 - 소득·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(차상위→기초) 발생시 선정요건에 적합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필요 없이 지급결정
 - 시비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만 18세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
 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: 공적이전소득 산정하되 가구특성지출비용(복지대상자 지자체 추가지원)에 포함되어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

5

행정사항

- 시비 특별지원 보조금 분기별 교부(市 → 구·군)
- 사후관리 등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업무처리
- 대상자가 지급 누락되지 않도록 타 복지 신청시 확인 및 안내 철저

붙임 : (참고) 관련 근거

참고

관련 근거

장애인복지법

제49조(장애수당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(補填)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·기준·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·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0조(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(補填)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·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
제4조(자립생활지원 신청) ① 대구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.)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장애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립생활지원 내용)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활동지원급여
2. 장애인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
3.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·홍보
4. 장애인 주거지원 및 개·보수
5.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수리
6. 직업훈련 및 구직 연계
7. 장애가정에 대한 출산 및 육아
8.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연계
9. 장애인 권익옹호
10.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